



갑을장유병원&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서

갑을장유병원(이하 "병원")과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(이하"복지관")은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한 발전도모 및 어르신들의 삶을 영위함과 더불어 기타 업무연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 1조 (목적)

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공동진행 또는 상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상대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한다.

제 3조 (합의사항)

1.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2. 양 기관 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는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4조 (협약범위)

양 기관은 제 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

1.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건강한 생활 및 의료적 혜택을 위한 병원의 정보를 공유한다.
2. 복지관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서로 협력한다.
3. 병원은 복지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진의 의료상담 및 기타 건강검진 등의 협력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돕는다.
4. 병원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진료비 및 건강검진 등과 관련하여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제공한다.

제 5조(기타사항)


1. 본 업무협약은 갑을장유병원과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.
2.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3. 본 업무협약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제의가 없을시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.

제 6조 (협약해지)

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를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이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05. 09

 (재)김해시복지재단
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
관장 황성철

서명

황성철



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
갑을장유병원
경영원장 이익희

서명

이익희